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特許權利範圍確認

〈大法院 第1部 判決〉(1983. 11. 23)

裁判長: 大法院判事 이 회 창

關與法官: // 이 일 규 · 이 성 렬 · 전 상 석

1. 審判請求人(上告人): 한미실업주식회사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풍남산업주식회사
3. 原審決: 特許廳 1980. 7. 21字, 1979年 抗告審判 당 第53號 審決
4. 主 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5. 理由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記錄에 의하면 審判請求人의 審判請求의 要旨은 자기는 特許 第3633號 나신권회합성수지관의 特許權者인데 被審判請求人이 製造하는 (가)號 圖面 및 說明書 記載의 나신권회합성수지관은 審判請求人의 權利範圍에 속하므로 그 確認을 구한다는 趣旨임이 明白한 바 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決은 證據에 의하여 被審判請求人이 製造하는 나신권회합성수지관은 (나)호 圖面 및 說明書에 의하여 製造하는 것임을 認定하고 (가)호 圖面 및 說明書와 (나)호 圖面 및 說明書를 相互 對備한 後 (가)號는 연질합성수지관 벽재 (1) 속에 경질합성수지보강체 (2)가 埋沒되어 있고 連질합성수지제머상체 (3)의 양측 連질합성수지관벽재 (1)의 측단부분상호간이 융착 또는 接착되어 있는 構造임에 대하여 (나)호는 連질합성수지관벽재와 경질합성수지보강체가 積층식으로 상하 융착되어 있어 양자는 連질합성수지관벽재와 경질합성수지보강체와의 結合狀態가 相異할 뿐 아니라 이들의 兩側斷部分의 相互 융착상태도 서로 相異하므로 그 技術的 構成의 相異로 인하여 作用效果도 相異하다고 判斷하고 記錄에 의하여 살펴보니 原審의 이러한 事實認定과 그 對比의 方法 및 그 技術的 對象에 있어

서의 同一性與否에 관한 判斷은 모두 首肯이 가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審理未盡이나 特許技術의 同一性與否에 대한 判斷을 그르친 違法이 있음을 發見할 수 없으므로 論旨은 採用할 수 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參 考

抗告審判

1979年 抗告審判 (당) 第53號

抗告審判請求人: 한미화학공업주식회사

被抗告審判請求人: 풍남산업주식회사

위 當事者間의 1978年 審判 第179號(特許 第3633號의 權利範圍確認審判) 審決不服 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 文: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抗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審 判

1978年 審判 第179號

審判請求人: 한미화학공업주식회사

被審判請求人: 풍남산업주식회사

위 當事者間의 特許第3633號의 權利範圍確認 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